(붙임 1)

「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내용

Ⅰ 개정 필요성

□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개정 내용 반영 및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개정

— 통계청의 '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'(2024.1.1일 개정, 2025.7.1일 시행)으로 변경된 코드를 반영할 필요

Ⅱ 주요 개정내용

□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'지원대상 제외업종'(<별표2>)에 기존 '금융 및 보험업'에서 행정 관련업으로 재분류된 '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'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'보험 및 연금업'을 '보험업'으로 변경

□ '지원대상 선정기준'(<별표1>) 조항 개정 및 KSIC 코드 변경사항 반영

o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2025.5.27일 시행)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

o 현재 선정기준이 없는 '연구 개발 우수기업'(A5), '의료교육관련기업'(A12)을 지원대상에서 삭제

o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타 부문에서 지원이 가능*한 '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'(A7)의 농림수산업 지원산업 영위 기업을 삭제

* 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(A7), 농림수산업관련기업(A13)의 선정기준을 통해서도 농림수산업 지원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

o KSIC 11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‘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’(A8)에 풍력발전업(KSIC 35115)을 추가

Ⅲ 시행일: 2025. 7. 1. 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